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11. 2.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0월 2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10. 3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9조)

###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 본 개정 조례안은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 안 제4조는 적용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으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위원회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2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3조는 구청장은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정하고 관련 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등 추진체계를 제도화 하고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3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 다.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 신설(안 제5조~제9조)
- 라. 지원계획의 수립 시기 및 계획 포함사항 포괄적 내용으로 수정(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개선안에 동의
- 라. 입법예고(2022. 9. 22. ~ 10. 1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